

검사공무원증		사진 (3.5cm×4.5cm)
제 호		
직 명 :		
성 명 :		
위의 사람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.		
유효기간		. . .부터 . . .까지
국도교통부장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		인

93mm×65mm
(보존용지(1종) 120g/㎡)

(뒤 쪽)

유 의 사 항
1. 이 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합니다.
2. 이 증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.
3. 이 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때에는 곧 그 사유를 발행처에 보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합니다.
4.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발행처에 반납하여야 합니다.